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경상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방법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 인원(명)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계	남	여	양성		
			490	437	47	6		
공개 경쟁 채용	소방사	일반소방	352	337	15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0~11:40 (100분)
경력 경쟁 채용	소방경	법무	2			2	- 필기시험 면제	
		구조	20	20				
		구급	90	60	30			
		차량정비	2	2				
		운전	3	3				
		정보통신	2			2		
		건축	2			2		
		의무소방전역	3	3				
소방장	소방관련학과	10	8	2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정비	2	2					
	항공운항·관제	2	2				※ 2월 중 별도 공고	
<p>☞ 응시생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채용길잡이 홍보영상이 Youtube 채널 [119안방] (https://www.youtube.com/channel/UCvjJRJMM3-D185kjY6TaX0w)에 2.7.(금)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 접수기간 2020. 2. 12.(수) 09:00 ~ 2. 17.(월) 18:00	3. 13. 이후	필기시험	3. 13.	3. 28.	4. 14.	
		체력시험	4. 14.	4. 20. ~ 4. 27.	5. 6.	
○ 취소기간 2020. 2. 18.(화) 09:00 ~ 2. 20.(목) 18:00	3. 13. 이후	신체검사	5. 6.	5. 11. ~ 5. 14.	5. 26.	
		서류전형		5. 11. ~ 5. 14.		
※ 기간 중 24시간 접수(취소) 가능 ※ 토·일(공휴일)은 제외		인·적성검사		5. 18. ~ 5. 21.		
		면접시험	5. 26.	6. 1. ~ 6. 5.	6. 26.	

- 1) 법무분야는 '20. 5. 6.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시험안내
- 2)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안내)합니다.

나. 필기시험문제 등 공개

- 1) 공개일시 : 2020. 3. 28.(토) 16:00
- 2) 공개장소 : 중앙소방학교(www.nfsa.go.kr) 및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3) 공개내용 : 필기시험 문제지, 가답안
※ 최종답안은 2020. 4. 2.(목) 119고시(<http://119gosi.kr>)페이지 게시

다. 필기시험 출제문제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 2020. 3. 28.(토) 16:00 ~ 3. 29.(일) 24:00
- 2) 신청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 작성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등록
- 3)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가답안 이의제기【붙임1】
※ 전화문의 및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3

시험절차 및 방법

가. 시험절차(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법무분야 제외)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검사 포함) → 면접시험

■ 법무분야 채용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검사 포함) → 면접시험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법무분야 제외)

가)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나)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공채·경채)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과 같음 【붙임2】	
소방 관계 법규	공개 경쟁 채용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 관련 학과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사 회	정치와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수학	
생활영어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다) 합격자 결정

-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50명 이상은 1.5배수, 선발예정인원 50명 미만은 2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 참조)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법무분야 제외)

- 가)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앓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나)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3】 참조
- 다)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함
- 라)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앓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마) 도핑테스트
 -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6%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 가)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부담)
- 나)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 다)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서류전형은 자격, 경력 및 가산특전 등을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 **서류 미제출자는 응시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마)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 ※ **인·적성검사 불참자는 다음시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가)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4

최종합격자 결정

- 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나. 법무분야는 면접시험성적(100%)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다.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의 재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호~2호 중략)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1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 공무원(등록의무자) : 소방장 이상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호~6호 중략)
7. 국민의 생명·신체·자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나.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사	소 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2. 12. 31.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경	법 무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소방사	구조, 구급, 차량정비, 운전, 정보통신, 건축, 의무소방전역, 소방전공학과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0.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 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 중 맨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p>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 단, 법무분야는 해당 없음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법무 (소방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에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구조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¹⁾ 또는 간호업무²⁾ 경력이 있는 자 <p>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p> <p>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분야 경력인정 범위(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구급 (소방사)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복무기관에서 발행한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차량정비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정비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군 경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격증 : 기능장(자동차정비), 기사(자동차정비), 산업기사(자동차정비), 기능사(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①, 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차량(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굴절·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정비업체 ② 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운전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명 이상) ②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2톤 이상) ③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④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단, 1종 보통면허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18.4.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정보통신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방송·무선 또는 통신분야 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무선 및 통신분야 관련 자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기술사</td> <td>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r> <td>산업기사</td> <td>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able>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건축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①~③【붙임6】, ④, ⑤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관련 [별표1]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②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전문분야 항목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보조) 근무경력
의무소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소방관련 학과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 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붙임7】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응시서류의제출 등)

1) 면허 · 자격의 보유(발급) 및 경력의 산정 기준일

적용분야	종 류	보유 기준일
공 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일
공개경쟁채용	가산점 관련 자격증	필기시험 전일
경력경쟁채용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필기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기간 산정	면접시험 최종일

① ‘응시하고자 함’은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 ② 기간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운전면허 및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 또는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

2) 경력이라 함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 · 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 경력을 의미하고, 유아휴직 ·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을 인정함

- 3)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시)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4)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년(365일), 1월(30일) 단위로 계산함
- 5)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6) 경력증명서 발급분야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붙임8】 , 4대보험 가입경력으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를 제출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9】 제출
※ 경력증명서의 ‘경력란’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군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계급별 임용일자, 부대근무경력, 징계사항 기재)
- 7)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10】 를 제출해야 함
- 8)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9) 시험에 관한 제출 · 증빙서류에 거짓 · 위조 · 변조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토·공휴일 제외)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소방경 7,000원, 소방사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제출

-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cm × 4.5cm (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신분증 스캔사진,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등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
-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 ·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 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면허 4. 응급구조사(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붙임11】「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3)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①에서 유리한 자격증 1개 ②에서 유리한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② 사무관리 가점을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1~5%)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면허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OC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면허증)에 대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 4) 자격증(면허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에 따른 오류 발생 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공개합니다.
- 바. 자격증(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되거나 취소됩니다.
-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차.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참여마당/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성명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 :• 이메일 :
응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분야 :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질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과목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 경로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붙임2】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광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 · 질식 · 제거 · 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p>*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p>

[붙임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여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여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여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여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붙임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 통에 90㎖이상이 되도록 수집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 B시료병에 30㎖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 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상북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 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 (B시료분석 요청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합격)으로 최종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양성)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불임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붙임5-1)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불임5】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fentanyl 및 유도체

‣ morphine

‣ pentazocine

‣ dextromoramide

‣ hydromorphone

‣ oxycodone

‣ pethidine

‣ diamorphine(heroin)

‣ methadone

‣ oxymorphone

II .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섞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5-1】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 _____

2. 성별 : 여 남

3. 생년월일 : _____

4. 응시번호 : _____

5. 핸드폰 : _____

6. 이메일 :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 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_____ 전공분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팩스 : _____ 이메일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6】

건축분야 인정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 공 하 는 업종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속한 공사	

- 「건축사법」 제4조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설계·사업관리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붙임7】**소방 관련 과목**

분야	과목
사회과학분야 (12)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소방심리학, 소방통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실무분야 (10)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자연과학분야 (14)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비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2. 20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 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붙임8]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경상북도지사 구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9】**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 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홍 ○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위	채직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병원	2017	주임	95.05.01. ~ 97.12.01. (2년 8월)	응급구조사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00시간	

입증인(1) 주 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붙임10】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휴대폰)			
학 교 명		학 과 (전 공)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경상북도의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전화)	성명	(인)
-----	-------------	----	-----

2020. . .

() 대학교 총(학)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11】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증 현황

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① 자 격 증 ～ 면 허 증 ～	기술자격증 소방관련 기술자격증 기술사·기능장	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자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거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동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전기, 전기공사, 천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설계, 의공, 저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저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3D프린터개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저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자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 기능자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박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휠러운전, 볼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퀸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차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3D프린터운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저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항해사 1급 ~ 4급 기관사·운항사 잠수기능장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대형견인차(舊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2급)
	소방시설관리사		
②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직무분야」 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기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기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기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기점과 사무관리 기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기점)

【붙임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소방공무원 채용(공채, 경채)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제공받는기관</th> <th>제공근거 및 목적</th> <th>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th> <th>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td> <td>- 성명, 주민번호</td> <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 </tr> <tr> <td>국세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td> <td>- 성명, 주민번호</td> <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 </tr> <tr> <td>경력증명서 발급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td> <td>-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td> <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 </tr> <tr> <td>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td> <td>-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td> <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 </tr> <tr> <td>자격증 발급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td> <td>-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td> <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 </tr> </tbody> </table>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p>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p>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0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